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11차 교육위원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 추가 등〉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22호)

2022.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30.

3. 회부연월일 : 2024. 10. 3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학교안전사고의 대상 학교범위로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  
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학교가 포함되어 있고, 대안교육기관은 현행법에 따라 제외되어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또한, 학교안전사고공제회의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  
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청구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제출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어 적시에 지급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학부모)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1.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 추가(안제2조제1호)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 학교의 범위에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의 학생 및 교원 등에 대하여도 학교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                                                   |
|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u>&lt;단서 신설&gt;</u> | 1. -----<br>-----<br>----- . 다만, <u>마목의 경우 제2장의 적용에 있어서는 학교로 보지 아니한다.</u> |
| 가. ~ 라. (생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마. 「 <u>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u> 」<br><u>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u>                   |
| 2. ~ 6. (생략)                                                        | 2. ~ 6. (현행과 같음)                                                          |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11조에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함)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등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sup>1)</sup>).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대안학교<sup>2)</sup>”의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sup>3)</sup> 학력이 인정되는데, 2024년 6월 기준 52개교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이상의 대안학교 외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이라 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

---

1) 「학교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대안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sup>4)5)</sup>, 현재 256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음.

### <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 비교 >

| 구분          |                 | 대안학교(각종학교)                                                                                               | 대안교육기관                                                                     |
|-------------|-----------------|----------------------------------------------------------------------------------------------------------|----------------------------------------------------------------------------|
| 개<br>요      | 목적              |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실시 | ·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 실시 |
|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             | 현황<br>(‘24. 6월) | 52개교                                                                                                     | 256개 등록                                                                    |
| 영<br>요<br>인 | 학력인정            | 학력 인정                                                                                                    | 학력 미인정                                                                     |
|             | 모집단위            | 지역/전국단위                                                                                                  | 자율                                                                         |
|             | 학생선발            | 학칙으로 규정                                                                                                  | 자율                                                                         |
|             | 교육과정            | 학칙으로 편성<br>(국어, 사회 교과는 교육과정 상 수업시수 50% 이상)                                                               | 자율                                                                         |
| 재<br>정      | 재정지원            | 재정결함보조, 목적사업비 등 시도별 상이                                                                                   | 별도 규정 없음                                                                   |
|             | 수업료             | 자율로 정함                                                                                                   | 운영위 심의                                                                     |
| 인가, 지정 등    |                 | 교육감 인가                                                                                                   | 교육감 등록                                                                     |

자료 : 교육부

####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5) 그밖에 “대안교육기관”으로의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과 절차, 등록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조사,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교원의 자격 등을 규정하여 그 동안 법적인 지위가 없이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학교안전공제의 가입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 한정되고 있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그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법」상의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안전공제의 가입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원 등을 학교안전사고 피해로부터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대안교육기관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편, 2020년 3월부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sup>6)</sup>, 청소년활동안전공제는 학교안전공제와 비교시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이고, 구체적으로 공제료, 피공제자, 보장범위, 보상한도 등에서 제도상 차이가 있음<sup>7)</sup>.

---

6) 교육부 보도자료, 「이젠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안전사고 공제보상 혜택」, 2020.3.3.

7) 공제료의 경우 각급별로 공제료를 산정하는 학교안전공제와 달리 학생 1인당 공제료를 산정하고 있어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안전공제의 부담이 더 큰 측면이 있고, 제3자의 피해배상에 대한 손해배상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피공제자가 학생에 한정되고 보상한도(사고당 한도 등)가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차이가 있음.

**< 학교안전공제와 청소년활동안전공제 비교 >**

| 구분                 | 학교안전공제                                                           | 청소년활동안전공제                                                                           |
|--------------------|------------------------------------------------------------------|-------------------------------------------------------------------------------------|
| 목적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행하는 수련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
| 사업자                | <b>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b>                                             | <b>학교안전공제중앙회</b>                                                                    |
| 가입자<br>(의무여부)      |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 ( <b>의무</b> 가입)                   |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 <b>임의</b> 가입)                                                          |
| 피<br>공<br>제<br>자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수련시설 장의 관리감독하에 수련활동을 하는 자                                                           |
| 공제료<br>(‘24년)      | 유(3,600원), 초(4,700원),<br><b>중(11,300원), 고(16,100원)</b>           | 학생 1인당 <b>10,260원</b>                                                               |
| 보장<br>범위           | <b>교육활동 중</b> 신체 상해 및 특정 질병*<br>* 일사병, 이물질 섭취 및 접촉, 외상으로 인한 질병 등 | <b>수련활동 중</b>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물 피해 및 피공제자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
| 보상<br>한도           | 사고당 한도는 없음<br>(사망 시 최대 2억 원 지급)                                  | 대인사고 1사고 당 10억 원 등                                                                  |
| 가입<br>현황<br>(‘23년) | 20,539개교(5,769,597명)                                             | 213개 기관(12,365명)                                                                    |

자료 : 교육부

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공제료, 피공제자 범위, 보장범위 및 보상한도 등의 차이뿐 아니라 안전공제에 의무 또는 임의가입 여부에 있어서 기본적인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학교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안전확보를 통한 학습권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교육감의 인가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동 기관의 자율성보장과 안전권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 단서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은 제2장(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sup>8)</sup>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안전 교육 실시 의무,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등을 대안학교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차이가 있음.

참고로, 최근 학교안전법 개정법률(법률 제18463호, '21.9.24. 개정, '22.3.25. 시행)에 따르면, 대학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여, 공제중앙회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대학이 선택적으로 해당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sup>9)</sup>.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에 규율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시·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8)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제4조의3(실태조사),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8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제8조의3(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 전담부서), 제9조(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9)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3.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4.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
5.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 개정안 관련 관계부처 및 기관등 의견 >**

| 구분      | 개정안에 대한 의견                                                                                                                                                                                                                                |
|---------|-------------------------------------------------------------------------------------------------------------------------------------------------------------------------------------------------------------------------------------------|
| 교육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각종 의무를 적용시 분쟁발생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li> <li>- 또한, 학원의 경우 학원법제4조제3항에 안전조치 관련 운영자의 책무를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 대안교육기관도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안교육기관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li> </ul> |
| 교육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제주도) 취지에 공감하나, 대안교육기관의 장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학교와 같이(제12조단서)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li> <li>○ (세종시) 청소년활동 안전공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 조문 신설은 불필요함</li> </ul>                          |
| 학교안전공제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안전관련 책무의 적용 가능성 및 실태파악의 어려움, 청소년 활동안전공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li> </ul>                                                                                                                        |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는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2건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으므로<sup>10)</sup>, 이와 병합하여 심사될 필요가 있음<sup>11)</sup>.

10) 문정복의원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안전공제 관련 규정 뿐(제3장부터 제11장)만 아니라 동법상의 다른 규정에도 적용되는 반면, 조정훈의원안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 관련 규정에 한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 차이가 있음.

1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126호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운영·설립자의 책무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현황 >

| 의안번호 | 대표발의<br>(발의일)         | 주요 내용                                |
|------|-----------------------|--------------------------------------|
| 1811 | 문정복의원<br>(2024.7.16.) |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대상 등 동 법의 적용대상에 대안교육기관 포함 |
| 1985 | 조정훈의원<br>(2024.7.19.) |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 포함            |

## 2. 공제사업의 안내(안 제41조의2 신설)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가입자가 피공제자에게 학교 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41조의2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p>제41조의2(공제사업의 안내) ①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등에게도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에게 제출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함<sup>12)</sup>.

12)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①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공제급여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에 대한 공제급여청구서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입원확인서 등 의무기록과 간병 필요 여부 등에 관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발급한 소견서로 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③공제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사실을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피공제자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정안은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피공제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해 안내(피공제자가 미성년자 학생인 경우 보호자등<sup>13)</sup>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              |
|--------------|
| 문 의 처        |
| 02)6788-5185 |

---

13) 제20조에 따르면 “보호자등”을 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참 고

## 대안교육기관 현황 ('24.6월 기준, 시도교육감 등록)

### □ 시도교육청별 대안교육기관 등록현황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
| 78 | 9  | 7  | 7  | 12 | 11 | 2  | 1  | 69  |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 8  | 4  | 7  | 6  | 11 | 11 | 7  | 6  | 256 |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기관 현황

| 교육청 |    | 기관명          | 교육청 |    | 기관명        |
|-----|----|--------------|-----|----|------------|
| 1   | 서울 | DGA디아글로벌학교   | 40  | 서울 | 꿈꾸는아이들의학교  |
| 2   | 서울 | 자라섬예주랑예술학교   | 41  | 서울 | 단재학교       |
| 3   | 서울 | 거꾸로캠퍼스       | 42  | 서울 | 은평씨앗학교     |
| 4   | 서울 | 서울기독교학교      | 43  | 서울 | 창창한        |
| 5   | 서울 | 한국연예예술학교(위탁) | 44  | 서울 | 보스코        |
| 6   | 서울 | 스쿨제프         | 45  | 서울 | 아름다운학교     |
| 7   | 서울 | 자리학교(위탁)     | 46  | 서울 | 안골마을학교     |
| 8   | 서울 | 소울브릿지학교(위탁)  | 47  | 서울 | 영세프스쿨      |
| 9   | 서울 | 세움학교(위탁)     | 48  | 서울 | 이야기학교      |
| 10  | 서울 | 푸른나무미디어스쿨    | 49  | 서울 | IT비전학교     |
| 11  | 서울 | 다애다문화학교(위탁)  | 50  | 서울 | 인투비전스쿨     |
| 12  | 서울 | 에인미용예술학교(위탁) | 51  | 서울 | 꿈틀학교       |
| 13  | 서울 | 금빛나래학교(위탁)   | 52  | 서울 | 서울정릉발도르프학교 |
| 14  | 서울 | 반석           | 53  | 서울 | 인디학교       |
| 15  | 서울 | 푸른나무학교       | 54  | 서울 | 소리를보여주는사람들 |
| 16  | 서울 | 남북사랑학교       | 55  | 서울 | 꿈이있는학교     |
| 17  | 서울 | 기쁨의학교(위탁)    | 56  | 서울 | 내일더하기      |
| 18  | 서울 | 청소년희망학교(위탁)  | 57  | 서울 | 꿈더하기학교     |
| 19  | 서울 | 두리하나국제학교(위탁) | 58  | 서울 | 성미산학교      |
| 20  | 서울 | 사람사랑나눔학교(위탁) | 59  | 서울 | 꿈터학교       |
| 21  | 서울 | 서울빛들발도르프학교   | 60  | 서울 | 와플         |
| 22  | 서울 | 별하학교(위탁)     | 61  | 서울 | 꿈이룸학교      |
| 23  | 서울 | 아우름학교        | 62  | 서울 | 청소년도서관 작공  |
| 24  | 서울 | 꿈미학교         | 63  | 서울 | 더유스        |
| 25  | 서울 | 크리스천글로벌스쿨    | 64  | 서울 | 우리들학교      |
| 26  | 서울 | 링컨학교(위탁)     | 65  | 서울 | 서울꽃피는학교    |
| 27  | 서울 | 성모마음행복학교(위탁) | 66  | 서울 | 삼각산재미난학교   |
| 28  | 서울 | 동방           | 67  | 서울 | 교육공간 민들레   |
| 29  | 서울 | 예하예술학교(위탁)   | 68  | 서울 | 숲나학교       |
| 30  | 서울 | 예룸예술학교(위탁)   | 69  | 서울 | 네스트학교      |
| 31  | 서울 | 사비오학교        | 70  | 서울 | 나눔공동체학교    |
| 32  | 서울 | 다음학교         | 71  | 서울 | 빛의자녀학교     |
| 33  | 서울 | 글로벌리더학교(위탁)  | 72  | 서울 | 킹씨드해피스쿨    |

| 교육청 |    | 기관명                 | 교육청 |    | 기관명                        |
|-----|----|---------------------|-----|----|----------------------------|
| 34  | 서울 |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        | 73  | 서울 | 성장학교 별                     |
| 35  | 서울 | 정암기독교학교             | 74  | 서울 | 사랑의학교                      |
| 36  | 서울 | 원두                  | 75  | 서울 | 열방아카데미학교                   |
| 37  | 서울 | 노엠스쿨                | 76  | 서울 | 한밀기독교학교                    |
| 38  | 서울 | 내일새싹학교              | 77  | 서울 | 르네상스학교                     |
| 39  | 서울 | 몽담몽담                | 78  | 서울 | 넥스트챌린지스쿨                   |
| 79  | 부산 | 온새미학교               | 84  | 부산 | 부산링크학교                     |
| 80  | 부산 | 부산발도르프학교            | 85  | 부산 | 반디기독교학교                    |
| 81  | 부산 | 거침없는우다다학교           | 86  | 부산 | 나드림학교/칼리지                  |
| 82  | 부산 | 부산글로벌참교육학교          | 87  | 부산 | 세움학교                       |
| 83  | 부산 | 부산참빛학교              |     |    |                            |
| 88  | 대구 | 대구링크학교              | 92  | 대구 | 히즈리더학교                     |
| 89  | 대구 | 꿈꾸는음악학교             | 93  | 대구 | 지앤씨학교                      |
| 90  | 대구 | 동일프로이데 제1학교         | 94  | 대구 | 갈릴리학교                      |
| 91  | 대구 | 유니스학교               |     |    |                            |
| 95  | 인천 | 대안교육기관<br>다사랑문화학교   | 99  | 인천 | 대안교육기관<br>온누리꿈의학교          |
| 96  | 인천 | 대안교육기관 오하비<br>리더십학교 | 100 | 인천 | 대안교육기관 경인링크학교              |
| 97  | 인천 | 대안교육기관 열음학교         | 101 | 인천 | 대안교육기관 수정비전학교              |
| 98  | 인천 | 대안교육기관 이봄학교         |     |    |                            |
| 102 | 광주 | 무진일움학당 무진일움학교       | 108 | 광주 | 겨자씨교육선교회<br>겨자씨크리스찬스쿨      |
| 103 | 광주 | 청소년공간 날다            | 109 | 광주 | 광주홍사단 래미학교                 |
| 104 | 광주 | (사)지혜교육공동체<br>지혜학교  | 110 | 광주 | 사단법인청소년광산문화의<br>집 광주밀알두레학교 |
| 105 | 광주 | 징검다리배움터 늘품          | 111 | 광주 | 사단법인산아래 산아래학교              |
| 106 | 광주 | YMCA 별별학교           | 112 | 광주 | 세품기독교학교                    |
| 107 | 광주 | YMCA 해밀학교           | 113 | 광주 | 화월주성장학교다운                  |
| 114 | 대전 | 세계로기독교학교            | 120 | 대전 | 트윈사성학교                     |
| 115 | 대전 | 한우리기독교학교            | 121 | 대전 | 새로남기독교학교                   |
| 116 | 대전 | 대전자유발도르프학교          | 122 | 대전 | 세빛스쿨                       |
| 117 | 대전 | 늘사랑기독교학교            | 123 | 대전 | 장자기독교학교                    |
| 118 | 대전 | 유니온크리스찬학교           | 124 | 대전 | 큰산학교                       |
| 119 | 대전 | 대전하바나학교             |     |    |                            |
| 125 | 울산 | 울산링크학교              | 126 | 울산 | 대영드림홈스쿨아카데미                |
| 127 | 세종 | 글로벌선진학교세종창의캠퍼스      |     |    |                            |
| 128 | 경기 | 153월드크리스천스쿨         | 163 | 경기 | 새이레기독교학교                   |
| 129 | 경기 | LT혁신학교              | 164 | 경기 | 샘물교육선교회                    |
| 130 | 경기 | OMC크리스천스쿨           | 165 | 경기 | 샘물학교                       |
| 131 | 경기 | SLG무릎위의학교           | 166 | 경기 |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
| 132 | 경기 | 가나안스쿨               | 167 | 경기 | 성남자유발도르프학교                 |
| 133 | 경기 | 고양발도르프학교            | 168 | 경기 | 소명나무학교                     |
| 134 | 경기 | 고양자유학교              | 169 | 경기 | 소명학교                       |
| 135 | 경기 | 그레이스기독교학교           | 170 | 경기 | 수원성민학교                     |
| 136 | 경기 | 글로벌리더스기독교학교         | 171 | 경기 | 수원칠보산자유학교                  |
| 137 | 경기 | 꿈틀자유학교              | 172 | 경기 | 수지꿈학교                      |

| 교육청 |    | 기관명           | 교육청 |    | 기관명            |
|-----|----|---------------|-----|----|----------------|
| 138 | 경기 | 나들목학교         | 173 | 경기 | 쉐마학교           |
| 139 | 경기 | 나무숲세움터        | 174 | 경기 | 시흥소명학교         |
| 140 | 경기 | 나스솔레          | 175 | 경기 | 안양YMCA초등대안버리학교 |
| 141 | 경기 | 다문화국제학교       | 176 | 경기 | 안양발도르프학교       |
| 142 | 경기 | 다산학교          | 177 | 경기 | 양평자유발도르프학교     |
| 143 | 경기 | 더불어가는배움터길     | 178 | 경기 | 예수향남기독교학교      |
| 144 | 경기 | 더샘물학교         | 179 | 경기 | 우리기독교학교        |
| 145 | 경기 | 더힘스쿨          | 180 | 경기 | 원천하나기독교학교      |
| 146 | 경기 | 동림자유발도르프학교    | 181 | 경기 |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
| 147 | 경기 | 동부서밋크리스천스쿨    | 182 | 경기 | 이루다학교          |
| 148 | 경기 | 동탄기독교학교       | 183 | 경기 | 이음학교           |
| 149 | 경기 | 두레줄기학교        | 184 | 경기 | 주빌리대안학교        |
| 150 | 경기 | 드림하늘학교        | 185 | 경기 | 중등수원칠보산자유학교    |
| 151 | 경기 | 디모데학교         | 186 | 경기 | 지구촌기독교학교       |
| 152 | 경기 | 릭스쿨           | 187 | 경기 | 채리티크리스천아카데미    |
| 153 | 경기 | 맑은샘학교         | 188 | 경기 |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
| 154 | 경기 | 밀알두레학교        | 189 | 경기 | 초등무지개학교        |
| 155 | 경기 | 부천새날학교        | 190 | 경기 | 카라크리스천스쿨       |
| 156 | 경기 | 불이학교          | 191 | 경기 | 파주자유학교         |
| 157 | 경기 | 브니엘비전스쿨       | 192 | 경기 | 평화의샘교육공동체      |
| 158 | 경기 | 산돌학교          | 193 | 경기 | 푸른숲발도르프학교      |
| 159 | 경기 | 산울배움공동체       | 194 | 경기 | 한국국제예술학교       |
| 160 | 경기 | 산학교           | 195 | 경기 | 한꿈학교           |
| 161 | 경기 | 새물결기독교학교      | 196 | 경기 | 현산크리스천스쿨       |
| 162 | 경기 | 새움학교          |     |    |                |
| 197 | 강원 | 예닮글로벌학교       | 201 | 강원 | 새숨학교           |
| 198 | 강원 | 영강쉐마기독교학교     | 202 | 강원 | 산돌자연학교         |
| 199 | 강원 | 이끌라318기독교사관학교 | 203 | 강원 | 해솔직업사관학교       |
| 200 | 강원 | 세인기독교학교       | 204 | 강원 | 협동조합다인학교       |
| 205 | 충북 | 마이폴학교         | 207 | 충북 | 하디글로벌스쿨        |
| 206 | 충북 | 좋은열매기독교학교     | 208 | 충북 | 대안교육기관 제천간디학교  |
| 209 | 충남 | 높은뜻씨앗학교       | 213 | 충남 | 사사학교           |
| 210 | 충남 | 벤자민인성영재학교     | 214 | 충남 | 폴앤다니엘기독교학교     |
| 211 | 충남 | 시내산학교         | 215 | 충남 | 꿈의학교           |
| 212 | 충남 | 별무리학교         |     |    |                |
| 216 | 전북 | 토기장이학교        | 219 | 전북 | 전주글로벌시민학교      |
| 217 | 전북 | 이랑학교          | 220 | 전북 | 신성학기독교학교       |
| 218 | 전북 | 실상사 작은학교      | 221 | 전북 | 글로벌하담기독교학교     |
| 222 | 전남 | 뉴젠리더십학교       | 228 | 전남 | 지오학교           |
| 223 | 전남 | 사랑어린학교        | 229 | 전남 | 무등자유발도르프학교     |
| 224 | 전남 | 순천어깨동무학교      | 230 | 전남 | 늦봄문익환학교        |
| 225 | 전남 | 더힘스쿨          | 231 | 전남 | 장흥다니엘학교        |
| 226 | 전남 | 잇다자유발도르프학교    | 232 | 전남 | 광주국제기독교학교      |
| 227 | 전남 | 지오초등학교        |     |    |                |
| 233 | 경북 | 상주희망학교        | 239 | 경북 | 그루터기기독교학교      |
| 234 | 경북 | 김천희망학교        | 240 | 경북 | 상주비전스쿨         |

| 교육청 |    | 기관명                | 교육청 |    | 기관명               |
|-----|----|--------------------|-----|----|-------------------|
| 235 | 경북 | 다문화대안예술학교          | 241 | 경북 | 왈덴스학교             |
| 236 | 경북 | 청자연학교              | 242 | 경북 | 동일프로이데제2학교        |
| 237 | 경북 | 경주늘봄학교             | 243 | 경북 | 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        |
| 238 | 경북 | 해러문화예술학교           |     |    |                   |
| 244 | 경남 | 마산링크학교             | 248 | 경남 | 이레기독교학교           |
| 245 | 경남 | 꽃피는학교              | 249 | 경남 | 밝은덕배움터            |
| 246 | 경남 | 한빛기독교학교            | 250 | 경남 | 넥스트아카데미           |
| 247 | 경남 | 산청간디마을학교           |     |    |                   |
| 251 | 제주 | 대안교육기관 보물섬학교       | 254 | 제주 | 대안교육기관 엘리스 학교     |
| 252 | 제주 | 대안교육기관<br>하울람예쉬바학교 | 255 | 제주 | 대안교육기관 나무와숲<br>학교 |
| 253 | 제주 | 대안교육기관 동백작은학교      | 256 | 제주 | 대안교육기관 제주법씨학교     |